파주시 관광사업소 공고 제2020-5호

파주시 관광시설 관리·운영 및 사용료 등 징수 조례 입법예고

「파주시 관광시설 관리·운영 및 사용료 등 징수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「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4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2월 17일

파 주 시 장

1. 자치법규명 : 파주시 관광시설 관리·운영 및 사용료 등 징수 조례

2. 제정이유

○「파주시 민북지역 안보관광시설사용료 징수 조례」, 「파주시 마장호수 수상레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」 및 「파주시 도라산전망대 망원경 사용료 징수 조례」를 통합하여 관광사업소에서 운영 관리하는 관광 시설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목적 및 용어의 정의(안 제1조 ~ 제2조)

나. 안전점검 등 조치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
다. 사용료 등 시설 사용에 관한 사항(안 제4조 ~ 제8조)

라. 운영·관리 위탁 등에 관한 사항(안 제11조 ~제12조)

□ 제정조례안: 별첨

4. 조례안 : 별첨

5. 의견제출

가. 제출기일 : 2020년 3월 2일까지(14일간)

나. 제출방법 : 서면·우편·FAX 등
 - 파주시 홈페이지(http://www.paju.go.kr) '입법예고'에 전문 게시
 - 자치법규정보시스템(http://www.elis.go.kr) '입법예고'란에 의견쓰기 이용 가능
다. 기재내용 : 주소·성명·연락전화번호·의견
라. 제출기관 : 파주시장(관광사업소)
 ○ 주소 : 경기도 파주시 제3땅굴로 210-358, 파주시청 관광사업소(우 10800)
 ○ 전화 : 031-940-8523 / FAX 031-940-8349

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자치법규명 : 파주시 관광시설 관리·운영 및 사용료 등 징수 조례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　　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개정안 내용	의　　견	비 고